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10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총괄의견	4
(1) 발의 배경	4
(2) 조문 체계 및 총괄의견	6
(3) 관계부처 의견	12
2. 주요 내용 검토	14
(1)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4
(2)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4조·제5조·제24조)	17
(3)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21
(4) 경영안정지원, 품질향상, 판매확대·소비촉진, 수출 촉진 지원 등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25
(5) 사업자단체 설립, 품질인증 및 우선구매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1
(6) 굴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 등(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7
(7)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부칙 등(안 제 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부칙)	40
[참고자료]	4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2. 20

3. 회 부 일 : 2025. 2. 21.

II. 제안이유

굴은 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와 칼슘 및 칼륨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어린이 성장발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전 세계인이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고 있어 식품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400여개소의 굴까기작업장에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371ha 굴수하식 어업권에서 연간 30만톤의 굴을 생산하여 국내 및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EU 등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패류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세계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굴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굴의 품질향상과 굴 및 굴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굴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굴과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국가가 굴과 굴가공품 등 굴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굴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굴산업 종사자가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총괄의견

(1) 발의배경

□ 굴은 사새목 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의 총칭으로¹⁾, 다량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특유의 풍미와 식감을 지녀 국내·외에서 식자재로 선호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굴은 주요 수산물 중 하나로 생산·소비되고 있음. 국내 굴 생산량은 연간 약 30만 톤으로 세계 2위, 수출액은 약 8천만 달러로 세계 3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굴 주산지인 남해안(통영, 거제, 여수 등)에서는 약 2만명²⁾이 굴 산업에 종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세계 굴 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생산량	4,901	5,082	5,268	5,553	5,865	6,153	6,227	6,345	6,780	7,162
1 중국	4,038	4,159	4,381	4,660	4,879	5,140	5,226	5,425	5,819	6,200
2 한국	253	303	287	283	330	340	357	326	330	324
3 미국	197	187	189	192	194	206	226	185	210	217

주: 주요 생산국가 중 1위부터 3위까지만 표기

자료: FAO FishStatJ 'Global production',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우리나라에서는 참굴, 강굴, 바윗굴, 털굴 및 벗굴 등이 존재하고 이 중 참굴이 주요 양식종으로서 식용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2) 2023년 기준 생산(양식) 1천명. 박신(굴까기) 1만 3천명, 가공·유통 6천명 - 출처: 수협

[국가별 굴 수출실적 현황]

(단위: 천 톤, 백만USD)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79	518	73	489	63	422	79	595	85	661
1 프랑스	13	113	15	122	11	91	15	133	17	143
2 중국	10	82	8	57	11	73	10	96	11	117
3 한국	10	69	11	77	9	71	10	80	10	80

주: 주요 생산국가 중 1위부터 3위까지만 표기

자료: FAO FishStatJ 'Global Aquatic Trade',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이처럼 굴은 우리 수산물의 생산·수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와 업계의 영세성 및 고령화, 위생 관련 규제 강화, 특정 국가로 수출국이 한정³⁾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굴 산업의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굴의 수출액 역시 2018년 이후 8,000만 달러 선에서 정체되고 있어 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5년 해양수산부의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1969년 수하식⁴⁾ 양식기술 개발 이후 굴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벗어나

3) 우리나라의 굴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물량 1만톤, 수출액 8,600만 달러 중 일본과 미국이 8,000톤, 6,100만 달러를 차지하여 1, 2위 국가에 대한 편중도가 큰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굴 수출실적 (대상국가별 실적)〉

(단위: 천 톤, 백만USD)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1	77	9	71	10	80	10	80	10	86
1 일본	5	32	4	32	4	29	4	31	5	37
2 미국	3	21	2	17	3	24	3	27	3	24
3 홍콩	1	9	1	9	1	11	1	8	1	9
4 대만	0	2	0	1	0	3	0	2	1	3
5 중국	1	5	1	3	1	3	0	1	0	3

4) 수하식 양식은 굴 유생을 부착기에 부착시켜 수면에 늘어뜨려 바닷속에서 양식하는 방식을 뜻함.

지 못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 역시 생굴 위주의 소비문화와 노로바이러스 등 패류 일부에 존재하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⁵⁾ 미래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위생 저해요인 예방을 위해 오염원 차단과 생산해역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굴의 품질향상과 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출증진 및 소비촉진 등 굴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조문 체계 및 총괄의견

가. 제정안의 조문 체계

□ 제정안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 하에

- 5) 25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양식수산물 선호도 조사('22년, 고려대학교) 결과 굴에 대한 전체 선호도는 25개 수산물 중 10위로 나타났고,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50~60대에서는 3위를 차지했으나 40대에서는 8위, 30대에서는 12위, 20대에서는 15위 등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선호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산물 선호도 조사 결과〉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대	새우	김	연어	전복	바지락	가리비	미역	우럭	꼬막	방어	참돔	홍합	참다랑어	다시마	굴
30대	김	새우	전복	미역	바지락	가리비	꼬막	연어	다시마	참돔	우럭	굴	홍합	방어	참다랑어
40대	김	전복	새우	꼬막	미역	바지락	가리비	굴	다시마	참돔	우럭	홍합	연어	참다랑어	넙치
50대	김	전복	굴	새우	꼬막	미역	참돔	바지락	다시마	가리비	홍합	우럭	연어	참다랑어	돔
60대	전복	김	굴	꼬막	미역	다시마	바지락	참다랑어	새우	참돔	해삼	홍합	우럭	가리비	멍게

4개 장, 27개 조문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2장 ‘굴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굴산업 진흥의 지원’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판매·소비·수출 촉진, 굴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등 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4장 ‘보칙’에서는 자료제출,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도 실시에도 필요한 부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의 구성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굴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7조(교육훈련)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10조(굴산업 전문기관)
제3장 굴산업 진흥의	제11조(경영안정 및 영영개선 지원) 제12조(굴의 품질향상)

구 분	내 용
지원	제13조(판매확대) 제14조(굴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5조(수출 촉진 지원)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7조(굴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품질인증)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제20조(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 제21조(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2조(굴산업 집적화 단지 내 굴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23조(굴산업 집적화 단지에 대한 평가)
제4장 보칙	제24조(자료제출 등) 제25조(청문)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총괄의견

□ 굴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산수출액 중 4위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미식의 재료로 활용되는 등 수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굴 위주로 취식하는 굴의 특수성과 위생과 관련된 불안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⁶⁾되거나 국내 소비가 일시적

6)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 해마다 일부 한국산 굴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검출 등의 사유로 美FDA의 리콜 또는 판매중단 권고 등의 조치가 발령된 바 있음.

으로 침체되는 등의 장애요인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시에 국내 굴 관련 업계도 다른 수산자원과 유사하게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굴산업을 국가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표] 수산물 수출입 상위품목(2023년 기준)

(단위: 천톤, 백만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합계		764	2997		6,443	6,959
1	김	35	793	새우(살)	105	856
2	참치	183	563	명태	377	601
3	고등어	111	110	연어	77	586
4	굴	10	86	오징어	137	391
5	게	2	84	기타어류	185	388

자료: 해양수산부

□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김의 수출 수요를 적극 개발하여 현재 전체 수산물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성장시키는 등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음.

제정안은 이 같은 김의 선례를 참고하여 차세대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굴을 개발·육성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굴의 판매와 수출을 제고하고 굴과 굴가공품의

-
- '23.5.(美 하와이주): 5건의 식중독 의심사례가 발생(노로바이러스 검출)하여 제품 리콜 실시
 - '23.6.(美 미네소타주): 5건의 식중독 사례 발생(노로바이러스 검출)하여 제품 리콜 실시
 - '24.4.(美 캘리포니아주, 유타주): 8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하여 리콜 실시
 - '24.6.(美 하와이주) 11명 식중독 의심사례 발생, 일부 환자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되어 리콜 실시
 - '25.3.(美 캘리포니아주): 6명 식중독 의심사례 발생, 일부 환자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되어 리콜 실시 중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내용에는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먼저, 굴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재 굴을 포함한 각종 수산물에 대한 지원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등의 일반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된 사례는 천일염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는 「소금산업 진흥법」과 김을 대상으로 하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김산업법”이라 함) 2건 뿐임.

굴 외에도 홍합, 전복 등⁷⁾ 많은 수산생물에 대한 양식 및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수온,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해 양식어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굴 이외의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품종개량, 수출증진, 소비촉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개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

7) 해양수산부의 양식품목별 생산량 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굴의 양식생산량은 310,076톤, 홍합류는 58,789톤, 전복류는 23,352톤으로 나타남.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개별 수산물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반법을 둔 의미가 약화되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굴이나 김 등 국내 생산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수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다음으로, 유사 법률인 「김산업법」과 비교할 때, 굴 산업 육성에 특화된 내용을 조문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본 제정안은 적용대상인 수산물의 종류만 다를 뿐 「김산업법」과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굴 산업 집적화 단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 및 구조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제정안이 김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본받아 굴의 소비·수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제정안과 「김산업법」이 모두 수산물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소비촉진, 수출증진, 품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조 및 내용에 일정 수준의 동일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

다만, 이처럼 제정안이 「김산업법」과 사실상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굴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 예컨대 굴의 위생 관련 지원 사항 등이 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굴산업 지원을 위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김산업법과 제정안 규정 비교

구분	김산업법	굴산업법
목적	·김의 품질향상과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	굴의 품질 향상과 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사 규정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지원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실태조사	·실태조사
	·교육훈련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소비촉진	·소비촉진
	·세계화 촉진	·수출 촉진 지원
	·자료제출	·자료제출
	·권한의 위임·위탁	·권한의 위임·위탁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굴산업 전문기관 지정
	·자조금의 적립지원	·자조금의 적립지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진흥계획 수립·지원·평가	·굴산업집적화단지 지정·진흥계획 수립·지원·평가

(3) 관계부처 의견

□ 해양수산부는 굴 산업에 내재된 국내·외 현안 해소 및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안 제2조(정의)에 따른 “굴산업”의 정의에 굴 어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에 ‘굴 생산기술 개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굴 양식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굴 종자와 관련된 사항을 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수출촉진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굴 생산의 위생·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제정안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 검토

(1)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조**는 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굴, 굴산업, 굴가공품 등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제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굴의 품질향상, 굴과 굴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굴”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연체동물로서 굴과에 속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2. “굴산업”이란 굴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굴가공품”이란 굴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굴산업 종사자”란 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자를 말한다.

5. “굴산업 집적화 단지”이란 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굴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안의 입법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일반적인 입법형식으로 보임.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김산업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동일한 구조 및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 안 제2조는 굴산업의 정의에 대하여 “굴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김산업법」에 규정된 “김산업”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

그런데 굴의 경우 양식이 대부분인 김과 달리 자연산 굴의 채취 등 어업을 통해 획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의규정에 그러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굴산업의 정의에 굴 종자의 배

양·생산 및 굴 어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굴 가공의 개념에 굴의 절단, 건조, 세척 등 단순공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4조·제5조·제24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4조는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24조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조문

안 제4조 및 제5조
제2장 굴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굴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굴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굴과 굴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4조 및 제5조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굴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안 제4조

- 안 제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안 제5조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의 포함항목을 보면, 「김산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과 그 항목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김과 달리 굴의 경우에는 위생 및 보건에 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수출촉진 및 국내 소비진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해양수산부는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2025년 1월)에 따라 지정해역⁸⁾이 아닌 해역에 대해서도 지정해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 방지시설(하수도 확충, 바다공중화장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굴 양식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굴 종자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굴 생산의 위생·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안 제5조

□ 다음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현실성있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굴 산업의 실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데, 안 제5조는 이러한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8) 외국과의 협약 이행 또는 외국 위생관리 기준 준수를 위해 설정한 해역(7개소, 34,435ha)으로 대장균,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육해상 오염원을 관리 중인 해역을 뜻함.

3) 안 제24조

□ 다음, 안 제24조는 기본·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에서 계획 수립 또는 실태조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등에 자료제출,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⁹⁾

- 현재 굴 양식이 남해안 일대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6조**는 굴산업 전문기관 등에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하거나 제조기술등의 산업화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7조는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굴산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굴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조문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굴산업 전문기관 등에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굴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굴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 등 굴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굴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2. 굴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굴의 품질향상, 생산촉진, 소

비확대 등 제정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인식 제고에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유사 입법례로, 「김치산업진흥법」¹⁰⁾, 「김산업법」¹¹⁾ 등 식품 및 수산물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둔 바 있고, 특히 김의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과 목포해양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종자개량과 기업체 등의 상품개발을 통해 김의 수출 증대를 이루어 낸 사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우량종자 개발 및 개체굴 양식기술 개발 등 ‘굴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의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조문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김치산업진흥법」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김산업법」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7조(교육훈련),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등

(4) 경영안정지원, 품질향상, 판매확대·소비촉진, 수출 촉진
지원 등(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1조는 굴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수급 안정, 시설개선,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굴과 굴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안 제14조는 굴과 굴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가공방법 보급 등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5조는 굴산업의 육성과 수출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3장 굴산업 진흥의 지원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굴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굴과 굴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굴과 굴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굴과 굴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굴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굴과 굴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수출 촉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굴과 굴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의 국제화와 굴류 및 굴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굴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굴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굴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굴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굴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검토의견

1)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굴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김산업법」 제11조¹²⁾의 규정을 참고한 것임.

현재 굴산업이 시설의 노후화와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인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영안정 지원,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내용에는 그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전국 굴양식 면허 발급건수는 1,241건이고, 굴 박신장은 2022년 기준 487개소로 추정되며, 굴가공업체는 2023년 기준 총 60개소로 조사되고 있는 바, 각 종사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재원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의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2025년 1월)에 따르면, 굴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동화·스마트화 장비 도입¹³⁾, 우량종자 개량

1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장비도입의 일환으로 컨베이어 벨트, 자동 선별기 등을 도입한 공동작업장('25년 4개소(총 20

연구¹⁴⁾ 등이 추진될 예정임.

2)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굴·굴가공품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수출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등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산업법」 제12조¹⁵⁾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서 달성하려는 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서는 굴의 품질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 제12조의 규정에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안 제12조는 「김산업법」 제12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굴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예컨대

역원), 굴 채취 자동화 및 1차 세척, 껍데기 분쇄 등이 가능한 스마트작업선 등의 도입이 추진될 계획임.

14) 현재 자연채묘 위주인 굴 종자산업에 인공채묘를 확산시키고, 알이 굵은 비만굴 개발을 위한 종자 개량 연구가 추진될 계획임('25~)

1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생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굴산업과 관련된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도 굴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굴 생산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사업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굴과 굴 가공품의 판매확대, 소비촉진,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시장개척, 가공·이용방법 보급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김산업법」 제13조부터 제15조¹⁶⁾까지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굴의 수출량은 연간 1만 톤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수출품 중 4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5년(2019~2023년)간 수출액이 8천만달러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는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국내 소비의 경우에도 위생관련 우려와 생굴 위주의 취식 방식에

16) 「김산업법」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젊은층의 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등 향후 소비가 위축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외적 판로개척과 홍보 등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에는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표] 수산물 선호도 조사 결과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대	새우	김	연어	전복	바지락	가리비	미역	우럭	꼬막	방어	참돔	홍합	참다랑어	다시마	굴
30대	김	새우	전복	미역	바지락	가리비	꼬막	연어	다시마	참돔	우럭	굴	홍합	방어	참다랑어
40대	김	전복	새우	꼬막	미역	바지락	가리비	굴	다시마	참돔	우럭	홍합	연어	참다랑어	넙치
50대	김	전복	굴	새우	꼬막	미역	참돔	바지락	다시마	가리비	홍합	우럭	연어	참다랑어	돔
60대	전복	김	굴	꼬막	미역	다시마	바지락	참다랑어	새우	참돔	해삼	홍합	우럭	가리비	멍게

자료: 해양수산부

□ 다만, 법체계적으로 볼 때 안 제13조(판매통대)와 제14조(굴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은 모두 국내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의 특성상 국가마다 식문화와 위생·안전 기준이 달라 업계의 자체 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그 밖의 판매통대, 소비촉진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긍정하는 의견임.

(5) 사업자단체 설립, 품질인증 및 우선구매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6조는 굴산업 종사자가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사업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8조는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품질인증을 받은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굴산업 종사자는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굴 및 굴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굴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굴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굴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굴과 굴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굴과 굴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굴과 굴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안 제16조 및 제17조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사업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 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모두 굴산업 종사자가 자체적으로 산업 현실에 맞는 식문화 보급, 품질향상,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김산업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현재 해양수산부는 예산사업인 ‘수산물 자조금지원 사업’을 통하여 굴 품목 자조금에 연간 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안 제17조는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정안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는 의의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17)에 자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도 이를 바탕으로 자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이해당사자인 굴 산업계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자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품목별 수산물을 대표하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 * 단체현황(11개) : (의무) 김, 전복, 광어, 메기, 민물장어, 송어, 향어, 관상어, 굴, (임의) 미역, 새우
- 단체별 **자부담 자조금(50%) 조성***하면, 그에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50%)**
(임의) 회원 중 **희망 회원**만 자조금을 조성, (의무) **모든 회원**이 자조금을 조성
- 법적근거: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예산개요:** 수산발전기금-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3065-301): 2024년 40억6,500만원, 2025년 43억 8,900만원 편성

17)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근 예산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25						
예산	4,341	3,907	3,516	3,516	3,516	3,165	4,065	4,389						
'24년 단체별 예산	김	광어	송어	전복	민물장 어	향어	메기	관상어	굴	미역	새우	관리	계	
	849	500	200	929	212	132	220	123	250	100	500	500	4,065	

자료: 해양수산부

2) 안 제18조 및 제19조

□ 안 제18조는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을 통해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우선, 제정안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18)에 따라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인증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고시에 따라 젓갈류인 ‘어리굴젓’과 죽류인 ‘굴죽’만을 품질인증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굴과 굴가공품 전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44개 품목) 고시

분 류	품 목 명
젓갈류(22)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뱀뎡이, 자하, 우렁챙이(멍게), 갈치속, 한치, 전복
액젓류(3)	멸치, 까나리, 새우
식해류(2)	가자미, 명태
죽류(6)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	꽃게, 민꽃게, 참게
건제품(2)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타(6)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5-1호 - [별표1]

따라서, 제정안이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독자적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인지, 수산전통식품에 한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취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적절한 품질인증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⁹⁾.

□ 다음, 안 제19조는 품질인증을 받은 굴 및 굴가공품에 대한 구매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통해 품질인증품이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 수요를 제고하여 굴의 품질향상을

19)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건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재
어리굴(건)	3	3	3	3	3

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신규 인증건수가 아닌 연말 기준 유효한 인증 건수를 뜻함
자료: 해양수산부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인증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됨.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굴 및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이 필요하고, 품질인증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우선구매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6) 굴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 등(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0조는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집적화 단지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집적화 단지 내 굴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단지 지정 취소,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조문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0조(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굴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굴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굴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굴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신청·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굴산업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굴산업 집적화 단지 내 굴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집적화 단지에 사업장을 둔 굴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굴산업 집적화 단지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굴산업 집적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취소·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의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2025년 1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생산시설·기술혁신, 시장 저변 확대, 위생·안전 관리 강화의 3대 전략을 세우고, 그 중 생산시설·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굴 집적화 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음.

해당 과제에서 해양수산부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400여 개의 굴 박신장을 통합 이전하여 굴의 양륙 → 가공 → 출하 기능을 갖춘 집적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집적화단지 내에 굴

종자 생산시설, 보관·가공시설도 설치하여 연관된 산업을 집적화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이러한 정부의 발전방안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굴 주산지인 남·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굴산업과 관련된 특구를 지정한 후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책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유사 입법례로, 「김산업법」²⁰⁾은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말산업 육성법」에서도 말산업 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굴 산업체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을 통해 관련 업체들을 집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부칙 등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부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5조는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해양수산부장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조문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부칙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부칙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 안 제25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관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상 기관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안 제26조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일부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임.
- ☐ 안 제27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소속 임직

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2) 안 부칙

- ☐ 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음.

이는 새로운 제정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및 하위법령의 제정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굴산업 관련 주요 통계자료

□ 세계 굴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901	5,082	5,268	5,553	5,865	6,153	6,227	6,345	6,780	7,162
1 중국	4,038	4,159	4,381	4,660	4,879	5,140	5,226	5,425	5,819	6,200
2 한국	253	303	287	283	330	340	357	326	330	324
3 미국	197	187	189	192	194	206	226	185	210	217
4 일본	164	184	164	159	174	177	162	159	159	165
5 프랑스	78	75	65	78	85	92	86	81	81	85
6 필리핀	22	22	20	20	23	29	36	53	41	40
7 멕시코	43	54	62	58	76	65	28	23	28	36
8 대만	28	25	22	22	23	22	19	19	18	17
9 캐나다	13	12	13	14	15	17	16	11	18	15
10 호주	12	12	11	11	7	9	9	9	11	12
기타	53	49	54	56	59	56	62	54	65	51

* 자료: FAO FishStatJ 'Global production'

□ 국가별 굴 수출실적

(단위: 천톤, 백만불)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79	518	73	489	63	422	79	595	85	661
1 프랑스	13	113	15	122	11	91	15	133	17	143
2 중국	10	82	8	57	11	73	10	96	11	117
3 한국	10	69	11	77	9	71	10	80	10	80
4 캐나다	3	28	3	33	2	19	4	45	6	67
5 일본	3	25	3	26	2	27	3	37	5	50
6 아일랜드	8	49	6	39	4	29	7	43	7	45
7 스페인	6	28	6	28	5	24	8	39	9	40
8 네덜란드	5	25	5	24	2	16	3	25	4	26
9 미국	3	25	3	22	2	14	2	17	3	18
10 멕시코	2	6	2	7	2	7	3	13	3	13
기타	16	68	11	54	13	51	14	67	10	62

* 주: hscode 기준 굴에 해당되는 코드(030711, 030712, 030719, 160551)로 집계

* 자료: FAO FishStatJ 'Global Aquatic Trade'

□ 국가별 굴 수입실적

(단위: 천톤, 백만불)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8	475	67	470	58	398	73	528	81	615
1 미국	14	90	11	78	11	74	16	114	19	161
2 홍콩	7	63	6	59	5	53	6	70	5	68
3 프랑스	7	41	7	38	7	31	10	50	9	50
4 이탈리아	5	32	6	37	6	27	9	37	9	48
5 일본	6	38	6	40	5	39	5	34	5	34
6 중국	4	40	4	42	3	27	3	35	2	28
7 대만	2	9	2	10	3	11	3	15	5	22
8 캐나다	3	22	3	21	2	17	2	19	2	21
9 스페인	3	15	4	16	1	8	2	14	3	21
10 네덜란드	1	13	1	13	1	14	2	17	2	17
기타	16	112	17	116	14	97	15	123	20	145

* 주: hscode 기준 굴에 해당되는 코드(030711, 030712, 030719, 160551)로 집계

* 자료: FAO FishStatJ 'Global Aquatic Trade'

□ 우리나라 굴 수출실적

(단위: 천톤, 백만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1	77	9	71	10	80	10	80	10	86
1 일본	5	32	4	32	4	29	4	31	5	37
2 미국	3	21	2	17	3	24	3	27	3	24
3 홍콩	1	9	1	9	1	11	1	8	1	9
4 대만	0	2	0	1	0	3	0	2	1	3
5 중국	1	5	1	3	1	3	0	1	0	3
6 태국	0	1	0	2	0	2	1	4	0	3
7 말레이시아	0	2	0	2	0	2	0	2	0	2
8 영국	0	1	0	1	0	1	0	1	0	2
9 싱가포르	0	2	0	2	0	2	0	2	0	1
10 베트남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3	0	3	0	3	0	2	0	2

* 주: 2023년 금액 기준 상위 10개국으로 작성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 KMI 재가공